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20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원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철

변론 종결2021. 1. 21.

판결 선고2021. 2. 4.

주 문

1. 피고 A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34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8.부터, 94,3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8. 의료법인 D E요양병원에게 2017. 2.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 조사하겠음을 통보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2017. 4. 5. 위 조사결과 위 E요양병원이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료법인 D 및 E요양병원의 종전 대표자인 C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다. C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합6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5. 9. C에게 '누구든지 의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1. 3. 9.경 비의료인인 F으로부터 F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모두 인수받고 운영하던 중 2014. 4. 24.경 위 F에게 다시 양도하여 이로써 C은 2011. 3. 9.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와 'C은 위 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년 4월 초경부터 2014년 4월 초경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8,834,762,6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위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가합2806호로 C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0. 'C은 원고에게 4,795,47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C은 2017. 2. 24. 배우자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2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바. 피고 A는 2017. 10. 20. C의 조카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사. 피고 B는 2020. 7. 20. 소외 G,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아. 소외 G, H는 2020.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억 원,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무자 H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자.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1, 2, 갑 제2, 4, 5, 8호증, 갑 제3, 10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11. 3. 18.부터 2013. 5. 9.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4,795,479,77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의 판단 시점과 상관없이 위 불법행위 당시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무자력이었는바, 무자력인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A 및 전득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C은 단지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에게 채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과 별거 상태에 있어 C의 채무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자 이를 매수한 것일 뿐으로 역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피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1. 3.경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모두 인수받고 위 병원을 약 3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위 병원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은 위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실, 위 현지조사를 받은 뒤에 바로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사실, C의 사실혼 배우자인 J는 2020. 8.경부터 위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 A는 2014. 9.경부터 2015. 7. 2.까지 K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C은 피고 A가 위 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한 당일 위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4. 4. 사임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 K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불법운영으로 C과 함께 기소된 소외 F이 설립 초기 임원으로 관여하였던 사실, 피고 A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 A와 C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들은 서로 인척관계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 및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B는 2020. 7. 20. 소외 G,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 G, H는 2020.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억 원,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4,795,479,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 1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94,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가액배상 범위는 위 194,340,000원이 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49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정재

별지